

---

# 과업지시서

[KIND 설립 5주년 기념영상 제작 용역]

---

2023. 3.



## I 추진목적

- 공사 설립 5주년을 맞아, 주요연혁, 경영성과 및 주요사업 현황 등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'5주년 기념영상'을 제작하기 위함

## II 과업개요

- 가. 과업명 : KIND 설립 5주년 기념영상 제작 용역
- 나. 과업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3.5.31.까지
- 다. 사업예산 : 금 삼천삼백만원정(₩33,000,000) (VAT 포함)
- 라.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
## III 과업범위

### 가. 홍보영상 기획 및 촬영 준비

#### 1) 제작방향 수립

- 기관 홍보영상 제작 사례 조사·분석
- 사전 기획회의를 통한 홍보영상 제작방향 수립

#### 2) 콘텐츠 제작 준비

- 전체 영상내용 기획 및 구성, 세부 촬영일정 등 조율
- 스토리, 시놉시스, 콘티 등 콘텐츠 구성안 협의

<영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>

- (설립목적)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공사의 설립 취지 및 역할 소개
- (주요연혁) 기관 설립 이후 발자취, 경영성과 및 사업현황
- (KIND Way) 도전적 인재상 및 혁신적 조직문화 공유
- (비전 2030) 공사의 미래상 및 경영방향 제시

#### 3) 참여자 섭외 및 관리

- 영상 기획·촬영·편집 등 전체 과정에 필요한 인력 채용 및 관리
- 영상별 구성에 적합한 인물 섭외 및 일정 조율
- 영상 참여자 비용 집행, 참석 안내, 일정 조율 등 전반적인 관리

## 나. 홍보영상(5~6분) 촬영·제작 및 현장 운영

### 1) 현장 공간구성 및 촬영 준비

- 영상별 특성을 반영한 장소 섭외, 공간세팅, 현장 일정조율
- 필요 기자재·물품구입 및 대여
- ※ 고품질 영상제작을 위한 촬영/사운드 장비 활용

### 2) 영상 제작 및 촬영현장 관리

- 참석자 관리 및 관계자 소통, 세부일정 확인 등
- 주요 사업현장 촬영, 관계자 인터뷰 등 촬영 진행
- 프로그램 참여자, 사업 담당자 등 촬영 인물에 대한 사전 촬영동 의서 및 초상권에 대한 동의서 등 양식 작성 및 관리
- 촬영 관련 안전사고 예방 대응계획 및 매뉴얼 수립 및 관리

## 다. 콘텐츠 편집 및 확산·송출

### 1) 영상 편집 및 디자인

- 규격에 맞는 영상 편집(30초 내외 티저영상, 5분 내외 본영상)
- ※ 16:9 Full-HD(1920X1080) 해상도 이상/4K(3840x2160) 해상도 우선 고려
- 영상 인트로, 아웃트로, 타이틀, 자막 편집 및 디자인
- ※ 메시지 전달을 위한 컴퓨터그래픽(CG), 특수효과, 배경음악 활용

## 라. 성과물의 제출

- 1)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일정이

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와 착수계를 제출한다.

- 2) 용역수행자는 2023.5.15.(월)까지 홍보 영상 중간보고안을 제작하여 USB파일(2개)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용역수행자는 2023.5.25.(목)까지 홍보 영상 최종보고안을 제작하여 USB파일(2개)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용역수행자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3.5.31.(수)까지 최종성과물을 USB파일(5개)로 제출해야 한다.
- 5) 용역수행자는 계약기간 완료 전에 준공계를 첨부하여 사업 수행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## IV 과업 수행 지침

### 가. 일반사항

- 1) 용역수행자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·외를 막론하고 저작권, 특허권, 의장등록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. 특히,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용역에서 기존에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용역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순수한 창작품만을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
- 2) 용역수행자가 개발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이하 공사)에 제출된 용역결과물을 위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에서 사용하는 중에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고, 그로 인한 공사의 물적, 심적 피해에 대하여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.
- 3) 본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,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수시로 공사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최종산출물에 반영해야 한다.
- 4)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,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, 어구의 해석 및 관계 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양자

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되 공사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.

- 5)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분석자료, 영상, 사진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공사가 소유하며, 공사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, 수정할 수 있다. 또한, 용역수행자가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해당 성과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는 것을 금지한다.
- 6)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, 부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·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7)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원에게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, 자료 유출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.
  - 공사에서 제공된 모든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유출금지 등 보호방안 강구
  -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법률(민·형사)상 제반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명시하는 보안각서 제출
- 8) 용역수행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사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공사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9) 공사와 용역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,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.

## 나. 기타사항

- 1)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후 사정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.